

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번	안 호	22-94
--------	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이 2022. 12. 19. 만료될 예정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재계약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지속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근거
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운영의 위탁)
- 「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운영의 위탁)

○ 필요성

- 역량있는 단체의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청소년활동서비스 제공
-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의 참여활성화 기여
- 청소년사업의 중심이 되는 구립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업의 안전성 및 영속성 제고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현황

구분	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	
소재지	월드컵로 25길 164(망원동)	
규모	연면적 959㎡(지하1~지상3층)	
수용인원	210명	
전 경	위치도	
		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2. 12. 20. ~ 2025. 12. 19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총소요예산 : 1,312,400천원(전액 구비)

(단위: 천원)

구분	합계	인건비*	운영비**	비고
합계	1,312,400	964,400	348,000	
2023년	433,000	317,000	116,000	인건비 상승률 반영
2024년	437,400	321,400	116,000	"
2025년	442,000	326,000	116,000	"

* 인건비 산정 : 관장1명, 부장1명, 정규직 5명, 계약직 3명(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)

** 운영비 내역 : 일반·공공운영비, 시설비 등

<참고>

구분	합계	인건비	운영비	비고
2022년	428,550	312,550	116,000	

- 산출근거
 - 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
[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-20347(2021.12.14.)]
 - 2022년 구립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
[아동청년과-24330(2021.12.24.)]
 - 구립청소년문화의집 2022년도 예산(안) 및 사업계획
[아동청년과-1060(2022.1.12.)]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
-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·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제1항

나. 기타사항

- 추진일정안
 - 2022. 10. 17. ~ 10. 28. :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신청서 접수
 - 2022. 11. 4. ~ 11. 10. :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
 - 2022. 11. 18.한 : 위탁 협약 체결

[관계법령]

<청소년활동진흥법>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전문개정 2014. 1. 21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8조(운영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.>